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1강_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

강사 : 백 영

생명보험설계사 시험안내

□ 1편 보험이론 및 윤리 : 1, 2, 3장

□ 2편 보험법규 : 4, 5, 6장

□ 3편 생명보험

□ 4편 제3보험

** 공통(1편, 2편) : $20 \times 3 = 60$

** 생명보험 / 3보험 : $10 \times 4 = 40$

1편 목차

-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-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- 제2장 생명보험 이론
- 제3장 보험 윤리

생명보험의 정의

(1)

-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를 대비한 경제적 준비제도
- 저축기능 + 보장기능
- 마네스 : 1인은 만인을 위하여, 만인은 1인을 위하여

생명보험의 역사

①

- 고대
 - 에라노이 (종교적 공제단체)
 - 콜레기어 (하층민의 상호부조조합)
- 중세
 - 길드 : 동업자간 상호부조조합
 - 톤틴연금 : 국가에 읍자금 제공 시 종신연금 지급
 - 생존율 : 파스칼
 - 사망률 : 헬리
- 근대
 - 최초의 근대적 생명보험회사 : 영국 에퀴타블 생명

우리나라의 생명보험

①

- 상호부조제도
 - 계 : 삼한시대부터 (돈, 곡식을 추령, 소수에게 모아줌)
 - 보 : 신라시대부터 (불교사원 공동재산 운영하여 지원)
- 근대적 생명보험
 - 1876년 최초 : 일본 생보사 국내대리점
 - 1960년대 : 단체보험 성장
 - 1970년대 : 개인보험산업 발전, 보험의 해 지정(1977)
 - 1990년대 : 보험시장 개방, 금융자율화
 - 2000년대 : 방카슈랑스 도입, 흠크핑 등 판매채널 다양화
 - 2020년대 :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

생명보험의 기능

①

- 사회보장제도의 보완
 - 사회보험 : 국민건강보험(장기요양보험), 국민연금, 산재보험, 고용보험
4대 보험 (연금저축보험 X)
 - 공공부조 : 기초생활보장, 의료급여 제공 (고용보험 X, 산재보험 X)
 - 사회서비스 : 노인복지, 장애인복지, 아동복지, 가정복지 등
(복지는 서비스)
- 3층 보장
 - 개인보장 : 개인연금
 - 기업보장 : 퇴직연금
 - 사회보장 : 국민연금

생명보험의 기능

①

- 사회보험 vs 민영보험 : 상호보완
 - 사회보험 : 의무가입, 법률 규정, 최저생계 및 의료보장, 사회적 형평성 (정부운영)
 - 민영보험 : 임의가입, 계약 결정, 보험료 수준 보장증감, 개인별 적정성 (민간운영)

생명보험의 기능

①

- 생명보험 운용자산 현황
 - 유가증권 60% 이상 (국공채 비중이 가장 높음)
 - 대출채권 10%대
 - 부동산 1%대
- 생명보험자산의 특성
 - 장기자금, 신탁재산, 공공적 성격
- 자산운용 원칙
 - 안전성
 - 유동성
 - 수익성
 - 공익성 (공익성 무관 X)

생명보험산업 현황과 전망

①

- 생명보험을 필요로 하는 사회적 배경
 - 1) 급속한 고령화와 노후준비 부족
 - 2023년 출산율 : 0.72명 OECD 최저 / 높은 노인빈곤율
 -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하향
 - 2) 총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
 - 7% 이상 : 고령화사회 ; 2000년 진입
 - 14% 이상 : 고령사회 ; 2017년 진입
 - 20% 이상 : 초고령사회 ; 2025년 도달
 - 3) 재해와 성인병의 증가
 - 사망원인 1순위 암, 2순위 심장질환
 - 3) 핵가족화와 자기책임주의
 -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 책임의식 점점 악화

생명보험과 재무설계

①

- 재무설계
 - 재무목표를 세우고 재무상태와 현금흐름에 맞게 자산을 배분하고 투자하는 생애 전반에 걸친 과정
- 재무설계의 필요성
 - 1) 생애 소비만족 극대화
 - 소득의 흐름과 소비지출의 흐름이 불일치
 - 중년기 잉여소득을 사회초년기와 노년기로 이전
 - 2) 미래 리스크 대비
 - 물가상승, 실업, 질병, 장수
 - 3)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대응
 - 부동산 편중에서 금융자산 비중 확대 예상
 - 금융상품의 다양화
 - 고령사회 진입

1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2강_생명보험 이론



강사 : 백 영

1편 목차

-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- 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- 제2장 생명보험 이론
- 제3장 보험 윤리

② 생명보험의 기본 원리

- 생명보험의 기본원리 : 대수의 법칙, 수지상등의 원칙
- 대수의 법칙
 - 관찰 횟수를 늘려 가면 발생 확률이 일정
 - 동일한 성질의 위험을 가진 보험단체의 가입자 수가 많으면 사고발생확률이 정확성이 증가되어 보험단체의 안정성 상승
- 사망률과 생명표
 - 사망률 : 1년간의 사망자 수 / 연초의 생존자 수
 - 국민생명표 : 전체 국민 대상
 - 경험생명표 : 보험가입자에 대한 실제 사망통계치를 근거로 작성
 - 2024년 4월부터 10회 경험생명표를 표준위험률로 사용
- 수지상등의 원칙
 - 납입보험료 = 지급 보험금 + 비용
 - 순보험료 계산

보험계약 관계자

②

- 보험계약자
 - 보험회사와 계약을 한 사람 = 보험료 납입의무
 - 자연인, 법인, 다수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등의 필요
- 피보험자
 -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자, 수에는 관계 없음
 - 타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의 경우 반드시 서면동의 전자서명도 가능 / 구두동의X
- 보험수익자
 - 보험금 청구권을 지정받은 사람
- 보험회사(보험자)
 - 보험금 지금 책임, 금융위원회 허가 (금융감독원 X, 생보협회 X)

② 생명보험 계약내용

- 보험사고
 - 보험금 지급을 약속한 사고
 - 사망, 생존, 장해, 입원, 수술, 진단, 만기 등
- 보험기간
 -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(=위험기간, 책임기간)
- 보험료 납입기간
 -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(매년1회 납입이 원칙, 월납 활용 다수)
 - 보험기간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음 (예 : 단기납)
- 보험금액
 -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약정된 금액
- 보험료
 -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

보험료 구성 원리

②

- 보험료 결정
 - 수지상등의 원칙 : 보험료 납입총액
= 지급하는 보험금 + 지출비용의 총액
- 현금흐름방식
 - 3이원방식 : 예정위험률, 예정이율, 예정사업비를 보수적인 표준기초율 가정
 - 현금흐름방식 : 3이원방식 + 계약유지율, 판매량, 투자수익률 등 다양한 가격요소를 반영하여 보험료 산출
(회사별 최적가정 → 상품개발 확대)

보험료 구성 원리

②

- 배당
 - 유배당 보험계약에 대하여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잉여금의 일정비율을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선적립 후 지급 (자유화)
- 배당의 지급방법
 - 현금지급방법
 - 보험료 상계방법
 - 보험금, 환급금에 가산방법 (보험금 감액방법 X)
- 무배당보험
 - 배당을 감안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므로 유배당에 비해 저렴
- 배당의 예시
 - 예상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연금보험의 경우 직전 5개년 실적을 근거로 가능

보험계약 성립

②

- 보험계약의 성립 요건
 - 낙성계약 : 보험계약자의 청약 + 보험회사의 승낙
 - 보험계약 청약
 - 불요식 계약이며 실무적으로 청약서 사용
 -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
 -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가능
(수신하였을 때 교부 인정, 송신X)
 - 통신판매 : 전화(이메일X)를 이용 계약자의 답변,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하여 설명의무 완료
- *개인보험계약의 단체취급 가능
- 동일한 단체에 소속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5인 이상이 동일 상품

보험계약 성립

②

- 청약철회
 - 보험증권 수령 후 15일 이내
(단 청약일로부터 30일 초과 시 철회 불가)
- 청약철회 시 반환보험료 : 기납입보험료
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 (즉시 X)
(신용카드는 취소)
- 반환지연 시 : 기납입보험료
+ 보험계약대출(공시X) 이율(연단위복리)로 계산한 금액
- 청약철회 불가능 계약 :
진단계약,
전문금융소비자 체결계약(단체계약),
보험기간 90일 이내 (1년 이내X) 계약

보험계약 성립

②

- 청약승낙, 거절
 - 낙성계약 : 청약 거절 가능
 - 승낙 및 거절기간
무진단계약 :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지가 없으면 승낙 간주
(진단계약 : 진단일 기준)
 - 거절 시 반환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 (연복리)
(신용카드 취소)
-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 - 1회 보험료를 받은 때 (주의 : 보험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)
- 진단계약 : 건강진단과 1회 보험료 납입이 모두 완성된 날
(둘 중 늦은 시점이 보장개시일)
(승낙 전이라도 보장개시)

보험계약 성립

②

- 보험계약의 효력 = 보장개시
- 예시)
- 청약 승낙 보험료납입(*)
- 청약 보험료납입(*) 승낙
- 청약 보험료납입(*) 건강진단(*) 승낙
- 청약 건강진단 보험료납입(*) 승낙

보험계약 성립

②

- 승낙 전 보험사고
 - 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: 책임
(면책 :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등)
- 보험계약 무효
 -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음 : 기납입보험료 반환
(해지가 아니므로 해약환금금X)
 - 무효사유
 - *타인의 사망이 보험사고 : 피보험자의 서면동의(전자서명) 불비
 - *만15세 미만자,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사망이 보험사고
 - *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 혹은 초과

보험회사의 주요 의무

②

- 보험약관의 교부, 설명의무
 - 약관을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 설명
 - 상기 의무를 위반한 경우
*3개월 이내 최소가능 (해지X, 무효X)
 - *보험계약대출 이용을 연단위 복리로 가산하여 취소 시 반환
- 보험금 지급의무
 - 중도보험금 : 특정시점에 생존
 - 만기보험금 : 만기까지 생존
 - 사망보험금 : 보험기간 중 사망
 - *사망추정 : 일반실종은 생사가 5년간 불분명하고 실종선고(행방불명X)
- 장해 정의
 - 장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 상실상태 (의학적인 판단 ; 일시적 X)
 - 한시적 장해로 5년 이상인 경우 장해지급률 20%로 지급

보험금 지급 의무

②

- 보험금 지급기일
 - 보험금 청구와 관련된 구비서류 접수 시 : 3영업일 이내
 - 지급사유 조사, 확인 필요 시 : 10영업일 이내
 - 10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시 : 30영업일 이내
 - 보험금 지급기일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:
소송제기, 분쟁조정신청, 수사, 해외사고
- 보험금 미지급 사유
 -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
(참고 : 심신상실 혹은 보장개시일 2년 경과 시 자살의 경우는 지급)
 - 보험수의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 -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

보험계약자 주요 의무

②

- 계약전 알릴의무
 - 피보험자의 위험을 축정하여 계약의 인수, 보험료 산정을 위해(선의성)
 - 보험계약자, 피보험자의 주요 의무(청약서 질문표에 명시)
 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에 있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경우
 - *회사가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을 때
 - *알릴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
 - *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 경과
 - *체결 후 3년 경과
 -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해지 : 해약환급금(기납입보험료X) 지급, 보험료 혹은 보험가입금액 조정
- 보험료 납입의무
 - 원칙은 연납이나 일시납, 연납, 월납 등

계약의 부활 등

②

- 보험료 연체
 - 2회 이후 보험료 납입최고(독촉)기간 : 14일(보험기간 1년 미만시 7일) 이상
 - 해지 : 납입최고기간 끝나는 날 다음날
- 통지의무(계약후 알릴의무)
 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(계약자, 수의자, 피보험자)
 - 연락처, 주소 변경시(계약자, 수의자 / 피보험자X)
- 계약의 부활
 - 해지 후 해지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: 3년 이내
 - 부활보험료 : 평균공시이율 + 1% 범위 내 추가
 - 심사 : 신계약과 동일
 - 강제집행으로 해지된 경우 :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의자로 변경하여 특별부활 가능
 - 설계사 등의 부당한 계약전환 부활 : 소멸 6개월 이내 부활 청구 가능

계약의 변경 등

②

- 보험계약의 변경
 - 보험종목 변경 : 1회 보험료 납입 후 1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인 경우
(예: 종신→연금)
 - 보험가입금액 변경 : 감액된 부분은 해지로 간주 (증액 X)
 - 보험계약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필요
 - 보험수의자 변경 : 보험회사 승낙 불필요
- 기타
 - 사망을 보험사고로 동의한 피보험자는 장래를 향하여 철회가능
 - 소멸시효 : 보험금 청구권 등 3년간 미행사시 완성(보험료 청구권 2년)
 - 보험회사의 손해배상책임 : 임직원, 설계사, 대리점의 사유로 손해 발생시
(보험증개사 X)
 - 보험나이 : 피보험자의 만나이 기준(6개월 미만은 버리고 6개월 이상은 1년)
매년 계약해당일 나이 증가
 - 보험계약대출 : 해약환급금 범위 내(납입보험료 X), 언제든지 상환 가능
 - 보험안내자료 : 약관과 다를 경우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

②

- 생명보험 언더라이팅

- 피보험자의 위험을 선택하여 적절한 위험집단으로 분류
- 보험료 및 가입조건 등 결정하는 과정(계약심사), 위험률차익 관리
- 역선택 방지 : 위험 사실을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행위 방지
- 필요 : 계약자간 공평성 유지 및 선의의 계약자 보호

- 언더라이팅 절차

- 1차 선택 : 보험설계사에 의한 선택
- 2차 선택 : 의적 진단에 의한 선택
- 3차 선택 : 언더라이터에 의한 선택
- 4차 선택 : 계약적부 확인에 의한 선택
(피보험자의 신체적, 환경적, 도덕적 위험에 대한 조사)

생명보험 언더라이팅, 클레임

②

- 언더라이팅 고려대상

- 환경적 언더라이팅 : 직업, 운전, 흡연, 음주, 취미, 거주지 위험
- 신체적 언더라이팅 : 연령, 성별, 병력, 신체상태
- 도덕적 언더라이팅 : 고의성, 도덕적 해이
- 재정적 언더라이팅 : 역선택 및 계약 실효 방지

- 표준미달체, 우량체

- 표준미달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높은 경우
 보험료 할증, 특정질병부담보, 특정부위부담보,
 보험금 삭감(보험가입 후 위험이 감소하는 경우)
- 우량체 : 표준체보다 위험이 낮은 경우
 보험료 할인

- 클레임

- 보험금 청구에서 지금까지의 업무 (계약적부 확인 X, 보험가입 업무 X)
- 사고조사 경험, 법률지식, 의학지식 필요

2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3강_보험윤리



강사 : 백 영

1편 목차

- 1편 보험이론 및 윤리

제1장 생명보험의 의의와 기능

제2장 생명보험 이론

제3장 보험 윤리

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

③

- 보험회사 영업행위 윤리준칙
 - 2018년 제정
 - 보험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보험영업활동의 기본원칙
 - 성과평가의 적정성, 내부통제, 분쟁해결 등
 - 보험상품 판매 전,후 보험소비자와의 정보불균형 해소
 - 부당영업행위 금지
 - 충실향한 설명의무 이행
- 모집종사자는 보험회사가 제작하여 승인된 안내자료만 사용
- 권유단계 : 상품설명서 제공
- 청약단계 : 보험계약청약서 부분, 보험약관
- 유지단계 : 1년 이상 유지 보험 관리내용을 연1회 이상 제공 (변액보험은 분기별 1회 이상)
- 고객정보 : 동의절차 밟아 최소한 정보 수집(목적달성 후 파기)
제3자 제공 금지(관계법령, 고객 등의 시 가능)
-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1인 이상 지정
- 다양한 민원접수 채널 운영(일원화 X)

보험설계사의 역할과 책임

③

- 보험인 윤리강령
 - 공공성, 공신력 제고, 성실봉사, 기술개발, 준법 (주주가치극대화 X 경쟁력 제고 X)
- 보험설계사 윤리의 중요성
 - 고객은 복잡한 약관보다 설계사의 설명을 더 신뢰
- 보험설계사의 자세
 - 법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(설계사 X) 입장에서 행동
- 보험설계사로서의 사명감
 - 단순한 상품 판매가 아닌 고객에게 제대로 된 보장설계
 - 전문성 : 세무, 부동산, 금융지식 등 다양한 분야 전문지식을 갖춤

설계사자신과 보험업에 대한 책임

③

- 3대 기본지키기 → 위반 시 3개월 이내 계약 취소 가능
 - 1) 보험약관 교부 및 중요한 내용 설명
 - 2) 청약서 사본(부분) 전달
 - 3) 자필서명 안내 및 확인
 - 고객(계약자 또는 피보험자)이 직접 서명
- 부당한 보험계약 전환(승환계약) 금지
 - 고객필요에 의한 계약전환시 비교설명확인서(청약서X)에 자필서명
- 불법광고 금지
 - 광고는 고객 동의 후 / 보험료(대출) 연체 안내는 등의 없이 가능
- 회사 승인 자료 사용
 - 보험회사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만 사용(금융감독원 승인 X)

보험회사 및 고객에 대한 책임

③

- 보험설계사의 보험회사에 대한 책임
 - 1) 법규, 회사규정 준수
 - 2) 보험료 수령 : 회사이름 영수증 교부, 일일수금 등 변칙적인 방법 불가
 - 3) 언더라이팅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
 - 4) 고객불만처리 : 구두 혹은 전화 등 접수 시 자체 없이 회사에 알림
- 보험설계사의 고객에 대한 책임
 - 1) 고객의 입장에서 적합한 상품 판매
 - 2) 회사 및 상품소개 : 안내자료 임의 작성시 회사승인 필요
 - 3) 고객정보보호
 - 주민등록번호는 고객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만 사용
 - 4) 판매 후 지속적 관리 : 계약유지, 보험금 지급 등

보험사기 방지활동

③

- 보험사기
 - 보험사기방지특별법
보험사기행위는 가중 처벌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
상습범 가중처벌 가능, 미수범도 처벌
 - 연성사기 : 보험사고를 확대(과장)한 경우, 다른 피해자는 없음
 - 경성사기 :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
- 보험사기 유형
 - 사기적인 보험계약 : 예) 고혈압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
 - 보험사고의 고의적 유발 : 가장 악의적
 - 보험사고의 위장 및 허위사고 : 전통적 보험범죄 (예 : 허위진단서)
 - 보험금 과다청구 : 과잉진료

보험사기와 정보의 비대칭 현상

③

- 도덕적 해이
 - 보험사고나 손해를 증대시킬 수 있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불성실한 행동
 - 내적 도덕적 해이 : 직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 - 외적 도덕적 해이 : 병원, 자동차 수리인 등이 간접적으로 보험제도를 악용
 - 역선택
 - 계산된 위험보다 위험이 높은 집단이 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발생률이 증가하는 현상
- *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의 공통점 : 정보의 불균형
*차이점
도덕적 해이 - 보험계약 체결 후 현실화 (예 : 무단횡단)
역선택 - 보험계약 체결 전 현실화 (예 : 발병을 숨기고 보험가입)

보험사기 계약 특징 등

③

- 보험사기 계약의 특징
 - 고액계약, 다수계약
 - 비연고성, 자발성계약
 - 부자연스러운 보험계약 : 소득수준보다 과다한 가입
 - 보험사기자의 개인적 속성 : 과중한 부채 등
- 보험범죄는 보험료 상승으로 선의 계약자의 피해
- 보험범죄의 사회적 피해
 - 보험제도의 존립기반 위협, 보험료 부당 인상
 - 생명준중 가치관 파괴
 - 보방범죄 증가
 - 보험산업의 이미지 악화
 - 공보험(건강보험)의 재정에 악영향으로 공보험료 상승

보험사기 방지활동 등

③

- 보험사기 방지활동
 - 연성사기(경성사기X) 위주의 생계형 보험사기 증가
 - 보험범죄수사협의회 : 금감원, 생손보험회, 보험회사
 - 보험범죄 신고센터 : 금감원, 보험회사
 - 보험사기특별조사반 : 보험회사 (직접 처벌X)
- 생명존중과 자살예방
 -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보험업계 노력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4강_보험모집 준수사항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- 2편 보험법규
- 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- 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- 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업법과 보험모집

(4)

- 보험모집 관련 법규
- 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/ 보험업법
- 보험업 구분 : 생명보험업, 손해보험업, 제3보험업
- 보험감독방식 : 한국은 실질적 감독주의 (공시주의 X, 준거주의 X)
(보험회사의 설립에서 해산까지 전 과정을 계속적으로 감독)
- 보험모집
-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행위
 중개 : 설계사, 중개사
 대리 : 대리점
-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
- 보험설계사 : 중개
 - 보험대리점 : 대리
 - 보험중개사 : 독립적으로 중개
 - 보험회사 임원(대표이사, 사외이사, 감사 및 감사위원 제외) 또는 직원

보험설계사 등록

(4)

- 생명보험설계사
- 금융위원회에 등록
- 생명보험협회가 금융위로부터 등록업무 위탁 받아 수행 (금융감독원 X)
-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: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설계사 등록요건
- 모집에 관한 교육과정 이수(합격일부터 1년 이내)
 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1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) 경력 + 교육이수
- 보험설계사가 되지 못하는 자
- 피성년후견인, 피한정후견인, 파산선고 후 미복권 / 신용불량은 다른 개념
- 보험업법 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벌금 이상 형을 받고
 진행이 끝나거나 진행면제 후 2년 미만
- 보험업법, 금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진행유예 기간 중
- 보험업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2년 미만
- 보험료, 보험금을 유용한 후 3년 미만

설계사 교차모집, 등록

(4)

- 교차모집제도
 - 일사전속주의 예외
 - 1개의 이종(異種) 보험회사 상품 판매 가능
 - 생명보험 ↔ 손해보험
- 등록, 말소
 - 등록 : 보험회사를 통해 협회에 등록(본인 직접 등록X)
 - 말소 : 회사를 통한 말소
 - 본인이 협회방문(협회 홈페이지 본인인증 가능) 직접 말소
 - 위촉과 해촉은 회사와 설계사의 관계
 - 말소는 협회에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것(말소 후 타보험회사 등록 가능)
 - 영업정지, 등록취소 가능 사유
 -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미영업, 적합성 원칙, 설명의무 위반 보험업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 2회(1회X) 이상 받은 경우 등

보험대리점

(4)

- 보험대리점
 - 업종 : 생명, 손해, 제3보험대리점
 - 설립형태 : 개인, 법인보험대리점
 - 보험회사(계약자 X)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대리, 보험료 수령 등 제공
 - 일사전속제가 적용되지 않아 여러 보험사 계약 체결
 - 보험금 지급, 계약적부확인은 대리점 업무 아님
 - 등록 : 금융위원회 권한을 위임 받은 협회
- 보험대리점 등록요건
 - 대리점 교육과정 이수(교육 이수 후 2년 이내 신청)
 - 생명보험 관계업무에 2년 이상(등록신청일로부터 4년 이내) 종사한 경력
 - 법인대리점 : 대리점 등록요건 갖춘 자 1명 이상
 - 이미 보험설계사,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보험대리점 불가
 - 영업보증금 : 개인대리점 1억원, 법인대리점 3억원 이내
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면제

보험중개사

(4)

- 보험중개사
 - 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(특정 보험사 소속 X)
 - 금융감독원에 등록 신청 (영업보증금도 금융감독원 예탁)
 -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은 불가
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
 - 방카슈랑스
 -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가능 기관
 - 은행, 투자매매(증개)업자, 저축은행 등(우체국X)
 - 신용카드업자(경영여신업자 제외) : 전화모집 가능
 - 점포 내 지정된 장소에서 대면 모집 / 인터넷홈페이지 가능
 - 방문판매, TM 불가 (신용카드업자 전화 등 판매가능)
 - 점포별로 2인 (3인X)까지 판매
 - 종신보험, 자동차보험 판매 불가

보험업법, 금소법에서 정한 준수사항

(4)

- 특별이의 제공 금지
 - 연간보험료 10%와 3만원 중 적은 금액 초과
예) 월보험료 2만원인 경우 22,000원 선물 제공 : 가능
- 보험안내자료 규정 위반시 벌칙
 - 보험 안내자료 기재금지 : 장래의 이익배당 예상
연금보험은 직전 5개년 실적으로 예시 가능
 - *설명의무 : 일반(전문X)계약자가 중요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하도록 설명
-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
 -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정보로 실손의료보험 중복 확인
- 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관련 준수사항
 - 통신 모집의 경우에도 설계사와 같은 등록(무등록자 X)
 - 청약철회, 계약해지도 통신수단으로 가능
 -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청약서 자필서명 취득이나 사망(강해)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로 전화모집은 음성녹음 등 요건 충족 시 자필서명 의무 면제 가능

협정에서 정한 준수사항

(4)

-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 유지에 관한 협정
- 금융위원회 인가
- 적용 : 협정 당사자인 보험회사 및 소속 모집종사자 (대리점 X)
- 위반행위시 : 피해회사는 6개월 이내에 생명보험 협회에 신고

- 제재금 (벌금X, 과태료X)
- 무자격자 모집 등 기타 100만원 이하
- 특별이익 제공 3,000만원 이하
- 경유계약(다른 모집자 처리) 200만원 이하
- 승환계약(등록말소 전후 3개월 해지 후 등록말소일 6개월 이내) 100만원 이하
- *본인, 배우자, 직계준비속은 가능하나 형제자매는 불가

우수인증설계사

(4)

- 우수인정설계사(CIC) 자격기준
- 3년 이상 동일회사 근속 설계사 또는 전속 개인대리점
(자회사형 GA등록 설계사 가능, 법인전속대리점 소속 설계사 X)
- 신계약유지율 : 13회차 90%, 25회차 80% 이상
- 직전 연도 불완전판매건이 없는 자
- 인증기간 : 6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(인증기간 1년)

4강 총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5강_보험소비자 보호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- 2편 보험법규
- 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- 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- 제6장 생명보험 세제

보험소비자 보호제도

(5)

- 예금자보호법
- 예금보험공사 : 예금보험료를 받아 지급사유 발생시 예금자에게 지급
- 지급사유 : 지급정지, 인가취소, 해산, 파산 (합병X)
- 보호대상 : 개인 및 법인 1인
- 보장금액 : 1인당 5천만원(원금 + 소정이자) <25년중 1억으로 상향>
- 비보호상품 : 재보험, 보증보험, 변액보험(최저보증은 보호), 법인보험 등
- 금융분쟁조정위원회
- 금융감독원 운영
- 조정 신청 후 30일 이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
- 60일 이내 조정안
-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재판상의 화해 효력 (재판결과에 우선X)
- 조정안을 20일 이내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것으로 봄
- 보험가입 조회
- 생명보험협회 : 생존자 및 사망자에 대한 보험가입조회
- 생존자 본인인증 : 공인인증서, 휴대폰 등 이용 인증 (신분증 사본X)

광고심의제도 등

(5)

-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
-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를 지정
- 대리인 : 배우자 또는 3촌 이내 친족
- 계약자 = 피보험자 = 보험수익자 인 경우 가능
- 광고심의 대상
- 간행물, 방송매체, 온라인매체 및 각종 인쇄물
- 브랜드광고는 협회 심의 제외
- 소속 설계사 광고물 : 보험사 준법감시인 확인
- 광고심의 절차
- 상품 및 업무광고는 사전심의가 원칙
- 흡연보험대리점 판매방송 : 사전심의 + 상시 모니터링
- 광고심의위원회 : 심의 없이 혹은 심의와 다르게 광고 시 1억원 이하 제재금

보험정보의 공시

(5)

- 공시
- 해당 기업의 재무사항, 영업실적 등을 외부에 알리는 제도
- 생명보험회사 : 회사의 경영공시, 상품공시
- 생명보험협회 : 회사별 경영공시, 보험상품 비교공시
- 금융감독원 : 회사별 재무현황 및 금융사고 현황 등
- 경기공시
- 결산공시 : 3개월 이내, 3년간 공시
- 분기공시 : 2개월 이내, 다음 공시 전까지(상반기 공시는 결산공시 전까지) 공시
- 수시공시
- 발생 즉시 공시, 3년간 공시
- 수시공시사항 : 중대한 사항
- 상품공시
- 보험회사 상품공시 : 계약 관리내용, 가격공시실에서 계약자가 가입설계 가능
- 생명보험협회 : 상품비교공시

보험정보의 공시

(5)

- 보험다모아
-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공동 운영
- 온라인 전용보험, 단독실손의료보험, 자동차보험 등 비교 및 가입경로 안내(바로 가입 X)
- 금융감독원 공시
- 보험회사의 경영상태를 비교, 평가 가능
- 회사별 재무현황, 금융사고 현황 등

생명보험 민원현황과 유형

(5)

- 보험민원

- 민원 : 민원인이 회사에 대해 이의신청, 진정, 건의, 질의 등의 의사표시

- 보험민원의 특징

- 보험은 어느 정도 민원을 내포할 수밖에 없는 속성 (우연한 사고)

- 보험회사와 계약자를 연결하는 판매채널 : 불완전판매 가능

-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및 판매정책 영향

- 보험민원은 악성민원인(문제행동소비자)에 의해 남용될 소지가 큼

- 보험민원의 주요유형

- 최다민원 : 보험모집,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민원

- 주로 금융감독원에 접수(우편, 팩스, 인터넷, 방문)

5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6강_생명보험 세제



강사 : 백 영

2편 목차

- 2편 보험법규

제4장 보험모집 준수사항

제5장 보험소비자 보호

제6장 생명보험 세제

개인보험 계약에 대한 세제 (근거 : 소득세법)

- 보장성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

- 보장성보험 : 만기환급금 ≤ 납입보험료

- 근로소득자(일용근로자 제외)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대상, 개인사업자X

- 납입보험료 100만원 한도, 12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
- 기본공제대상자 :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, 배우자/장애인 나이 무관

-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 : 100만원 한도 15% 세액공제(지방소득세 별도)

- 중도해지 : 해당 연도 세액공제 가능

- 국민건강보험료, 고용보험료, 노인장기요양보험료 : 소득공제

- 연금계좌

- 연금저축계좌 : 연금저축보험

연금저축신탁

연금저축펀드

- 퇴직연금계좌 : 확정기여형(DB형)퇴직연금

개인형퇴직연금계좌(IRP)

*확정급여형(DB형)퇴직연금은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에서 제외

연금계좌 세액공제

⑥

- 연금계좌 세액공제
 - 종합소득자 납입액 12% (지방소득세 별도)
 - 종합소득액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 5,500만원 이하) 15% (지방소득세 별도)
- 연금계좌 납입액 (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)
 - 연 600만원(퇴직연금 포함시 900만원)
 - 연 1,800만원까지 납입가능
 - 총급여 6천만원 근로소득자 사례

단위 : 만원

연금저축계좌납입액	퇴직연금계좌납입액	세액공제 대상금액	세액공제액(12%)
0	900	900(0+900)	108
200	700	900(200+700)	108
700	200	800(600+200)	96
900	0	600(600+0)	72

연금보험 vs 연금저축

⑥

-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
 - 10년 이상
 - 일시납 1억원
 - 월적립식(월150만원) 납입기간 5년 이상(선납 6개월 이내)
 - 종신형으로 55세 이후 사망시까지 연금(중도해지 불가)

구 분	연금보험	연금저축
취급기관	생명보험회사	모든 금융기관
세제혜택 적용요건	일시납,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, 종신형 연금보험계약별 요건 충족	보험료납입 및 인출요건 충족
보험료 납입시 세제혜택	없 음	연금계좌 세액공제
보험금 수령시 세제혜택	보험차익 비과세 (이자소득세 비과세)	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 (3~5% 세율 적용, 지방소득세 별도)
소득구분	이자소득	연금소득

보험세제

⑥

- 단체보장성보험료 손금산입
 - 회사가 부담한 단체보장성보험료는 급여에 해당
 - 〈회사는 손금(비용), 종업원은 급여에 해당〉
 - 연 70만원 이하 : 복리후생비로 회사는 손금 인정, 종업원 세부담 없음
 - 연 70만원 초과 : 일반 단체보장성보험과 동일
- 퇴직연금
 -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
 -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운용
 - 근로자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 -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, 개인형퇴직연금(IRP)

보험금의 상속증여

⑥

- 상속 및 증여세
 - 상속세(사망세), 증여세(생전)는 재산의 무상 이전에 부과
 - 포괄주의
 - 세율 : 1억 이하 10% ~ 30억 초과 50% 누진
-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
 -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부분은 상속재산으로 간주
 - 사례 : 계약자, 피보험자(父) / 수익자(子) / 보험금 5천만원
보험료 1천만원 중 父 8백만원 납입
$$5천만원 \times 8백만원 / 1천만원 = 4천만원(\text{상속재산})$$
-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
 - 수익자 ≠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상속세 과세
 - 수익자 = 실질적인 보험료 납입자 : 과세X

보험금의 상속증여

⑥

- 상속순위
 - 1순위 : 직계비속 + 배우자
 - 2순위 : 직계존속 + 배우자
 - 3순위 : 형제자매
 - 4순위 : 4촌 이내 방계혈족
 - 태아는 상속순위 인정
 - 배우자 상속분은 5할을 가산
- 금융재산 상속공제
 - 순금융재산 최고 2억원까지 상속공제
 - 2천만원 이하 : 전액
 -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: 2천만원
 - 1억원 초과 : 순금융재산 20%(2억원 한도)

보험세제

⑥

-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
 - 납입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과세
 - 증여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을 증여재산으로 봄
-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
 -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
 - 장애인이 보험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적용

소득세법

⑥

- 과세소득의 범위
 - 개인의 소득에 대해 열거주의
 -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유형별 포괄주의
 - 종합과세 : 이자, 배당, 사업, 근로, 연금, 기타
 - 분류과세 : 퇴직, 양도
- 종합소득세 계산
 - 1.1 ~ 12.31까지 소득을 계산하여 다음연도 5월 신고, 납부
 - 과세표준 = 종합소득금액 - 종합소득공제(기본공제, 추가공제 등)
 - 산출세액 = 과세표준 X 세율
 - 세율 : 1,400만원 이하 6% ~ 10억원 초과 45% 누진
- 금융소득 과세
 - 금융소득 = 이자소득(저축성보험 보험차익 포함) + 배당소득(집합투자기구 이익 포함)
 - 금융소득 종합과세 :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
 - 분리과세 : 2천만원까지 원천징수 14% + 지방소득세 1.4% = 15.4%

보험세제

⑥

- 연금소득 분리과세 선택
 - 사적연금(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)은 총연금이 연 1,500만원 이하 *55세 이후 수령, 5년경과 수령, 연금수령한도 내 수령
 -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*70세 미만 : 5%
80세 미만 : 4% (증신형 4%)
80세 이상 : 3% (증신형 3%)
 - 연금수령조건 미충족 : 기타소득으로 15% 적용
- 보험설계사 세제
 -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
 - 보험회사는 설계사 수당 지급 시 3%(지방소득세 별도)를 원천징수
 - 간편장부 대상자 : 신규 / 직전 과세기간 수입이 7,500만원 미만
 -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: 직전 7,500만원 이상 /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

6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7강_생명보험의 개요 및 상품



강사 : 백 영

3편 목차

- 3편 생명보험
- 제7장 생명보험의 개요
- 제8장 생명보험 상품

생명보험의 개요

(7)

- 생명보험 관련 법규
 - 상법 보험편 : 생명보험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근거법률 (표준약관 근거)
 - 보험업법 : 보험업 허가 및 감독
 - 기타 : 공정거래법, 자본시장법(변액보험), 예금자보호법,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(보험업법)
- 생명보험의 정의
 - 생명보험상품 :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(우연성)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(보험업법)
-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 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 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 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생명보험의 특징

(7)

- 생명보험계약의 특성
 - 유상, 쌍무계약성 :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,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
 - 불요식, 낙성계약
 - 부합계약성 : 약관을 전체로 동의하거나 거절(작성자 불이익의 원칙)
 - 사행계약성 : 장래의 우연한 사고(경제 안정을 위한 소극적 이익추구)
 - 선의계약성 : 신의성실의 원칙, 고지의무
 - 계속계약성 : 일정한 보험기간 동안 계속
 - 상행위성 : 보험회사 및 계약자 모두 상법 적용
 - 개별성, 단체성 : 계약자는 개별, 보험회사는 다수 계약자
- 생명보험 상품의 특징
 - 무형의 상품 : 구매 후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려움
 - 미래지향적, 장기효용성 상품 : 장래 보험사고 발생시점에서 효용인식
 - 청약과 승낙 등 절차 필요 : 계약자 청약 + 보험회사 승낙(증권교부X) 고지의무, 필요시 건강진단, 심사 등 절차
 - 다양한 설계가 가능
 - 계약후 관리가 필요 : 예) 갱신안내

생명보험 상품의 구성

⑦

- 상품개발 원칙
 - 보험회사는 상품을 개발할 경우 기초서류 작성
사업방법서(계획서), 보험약관,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(청약서X)
 - 금융위원회 신고 (생명보험협회X, 금융감독원X)
 - 주계약과 특약
 - 주계약 : 기본이 되는 보장내용(보장성, 저축성)
주계약만으로 보험계약 성립 가능
 - 특약 : 고객 니즈에 따라 주계약에 특약을 부가
특약만의 가입은 불가
- *보장 추가, 확대 특약 : 암보장, 입원특약 등
*편의를 위한 제도성 특약 : 우량체할인특약, 선지급서비스특약, 연금전환특약 등

생명보험 상품의 분류

⑦

- 상품 분류
 - 주계약 보험사고 기준 :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 - 개인 보장성 : 사망(종신, 정기)
제3보험(질병, 상해, 간병)
 - 개인 저축성 : 생존(연금, 교육)
생사혼합
개인형퇴직연금(IPR)
- 개인보험 vs 단체보험 (보험계약자 수가 아닌 대상에 따라)
 - 개인보험 : 피보험자를 개인으로 한정
 - 단체보험 : 단체의 구성원을 주피보험자로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가입
계약관리 편리
보험료 저렴

보험상품의 분류

⑦

- 보장성 vs 저축성
 - 보장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(만기환급금)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
 - *만기환급금 ≤ 기납입보험료
 - *정기보험, 종신보험, 제3보험
 - 저축성보험 :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
 - *만기환급금 > 기납입보험료
 - *연금보험, 교육보험, 연금저축보험 등
- 생존보험, 사망보험, 생사혼합보험
 - 생존보험 : 만기까지 살아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 ; 연금보험, 교육보험
 - 사망보험 : 보험기간 중 사망시 보험금 지급 ; 정기보험, 종신보험
 - 생사혼합보험 : 사망보험(보장) + 생존보험(저축)

보험상품의 분류

⑦

- 일반계정 vs 특별계정
 - 특별계정 : 일반계정이 아닌 별도의 계정에서 운용
 - 특별계정상품 : (세제적격)연금저축보험, (실손의료보험X)
퇴직연금원리금보장보험, 퇴직보험, 변액보험, 자산연계형보험
- 준비금의 이자적립방식
 - 금리확정형
 - 금리연동형 : 운용수익률 혹은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 (대부분 저축성보험)
 - 실적배당형 : 변액보험(투자성과가 100% 계약자에게 귀속)
 - 자산연계형 : 특정자산의 운용실적에 연계
최저보증이율(1~2%) + 추가이율
변액보다 안정적이며 일반상품보다 높은 수익률 기대
- 정액보험 vs 실손보험
 - 정액보험 : 보험금 확정 (대부분의 생명보험상품)
 - 실손보험 : 실손의료보험은 순해액 일부는 본인이 부담(본인부담제)

보험상품의 분류

⑦

- 갱신형 vs 비갱신형
 - 갱신형보험 : 일정기간 경과 후 위험률을 변경하여 보험료를 다시 산정
 - 실손의료보험, 일부 질병보험, 간병보험에 적용
 - 갱신여부는 가입자가 결정
- 표준형 vs 저해지환급형
 - 표준형 : 해약환급금 모두 지급
 - 저해지환급형 : 일정 기간 동안 해약환급금을 적게 주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낮게 책정
- 기타
 - 진단, 무진단
 - 배당, 무배당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종신보험
 -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더라도 약정된 보험금 지급
 - 특약 부가로 종합보장형 보험설계 가능
- 유니버설보험
 - 보험료 추가납입, 중도인출 가능(유니버설 기능)
 - 기본보험금에 공시이율(예정이율X, 실적배당률X)로 부리 되어 추가 적립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장애인 보험
 - 비장애인과 동일한 심사, 정당한 사유 없이 청약거절 불가
 -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가능
 - 장애인전용보험상품 : 재해사망, 질병사망 모두 보장 가능
 - 세제혜택 : 세액공제 100만원 추가(15%)
- 장애인의 수익자인 보험금 연간 4천만원 한도 증여세 비과세
- 장애인전용보험 제도성특약 : 일반보장성보험에 가입도 장애인세액공제 가능
-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(사업비율과 이자율 우대적용)
- 생명보험협회는 장애인 보험가입차별 신고센터 운영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연금보험
 - 연금개시 전 : 제1보험기간 / 연금지급기간 : 제2보험기간
 - 제1보험기간 사망시 : 계약자적립액 또는 사망보험금 지급 후 계약 소멸
- 연금의 지급방법
 - *종신연금형 : 평생 지급 (연금지급 후에는 해지 불가)
 - *확정연금형 : 연금지급기간 확정
 - *상속연금형 : 생존기간에 적립금의 이자만 지급
 - *혼합연금형 : 지급방법 혼합선택 (종신형을 선택하면 계약해지 불가)
- 세제적격 연금저축
 - *가입나이제한 : 없음
 - *최소납입기간 : 5년 (10년 X)
 - *납입한도 : 연간 1,800만원 (분기 300만원 X)
 - *근거법령 : 소득세법 (조세특례제한법 X)
 - *보험료 공제 : 세액공제 (소득공제 X)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퇴직연금
 - 퇴직금을 외부금융기관에 적립
 -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
- 제도 종류
 - * 확정급여형(DB) :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확정
 - * 확정기여형(DC) : 운용수익에 따라 퇴직급여 변동
 - * 개인형퇴직연금(IRP) : 퇴직 또는 이직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, 개인적 가입
 - * 기업형 IRP : 상시근로자 10인(5인X) 미만 사업장 (DC형 도입과 동일 효과)
- 퇴직연금사업자 : 보험회사, 은행, 증권, 근로복지공단 (저축은행X)
- 가입대상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
- 자산관리 계약 : 보험계약, 신탁계약
- 근로자 교육 : 연 1회 이상
- 판매 : 퇴직연금모집인 자격 취득자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변액보험
 -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 (실적배당형 보험)
 - 보험업법, 자본시장법 동시 적용
 - 생명보험회사만 판매
 - 투자실적에 따라 보험금과 해약환급금 변동
 - 투자리스크를 계약자가 부담 (특별계정 운용)
 - 선택특약은 일발계정에서 운용
 - 안전성보다는 수익성을 좀 더 중시
 - 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을 특별계정에 투입
 - 계약자 적립금이 특별계정의 평가에 따라 매일 변동
- 일정 수준이상 사망보험금 보증(최저보증) : 중도해약시 최저보증이 안됨
 - * 변액종신, 변액유니버설보장형 - 기본사망보험금
 - * 변액연금, 변액유니버설적립형 - 기납입보험료
 - * 변액연금 연금개시시점 - 기납입보험료

주요 생명보험 상품

⑦

- 변액보험 상품
 - 구조 : 기본보험계약 + 변동보험계약 + 선택특약
(보험료 산출) (특별계정) (일반계정)
- 종류
 - 1) 변액종신 : 연금전환특약 가능
일반종신보험으로 전환 가능
 - 2) 변액연금 : 1보험기간 중 사망시 기본보험금 + 계약자적립금 지급
 - 3) 변액유니버설 : 적립형, 보장형
- 계약관리 : 분기별 1회 이상 계약자에게 운용실적 등 통보
- 보험회사 홈페이지 : 계약자별 운용현황 확인 가능

7강 종료

생명보험설계사 핵심특강

8강_제3보험



강사 : 백 영

4편 목차

- 4편 제3보험

제9장 제3보험의 개요

제10장 제3보험 상품

제3보험의 개요

(8)

- 제3보험의 정의

- 생명보험(정액보상)과 손해보험(실손보상) 성격을 함께 가짐 / Gray Zone
- 생보사, 손보사는 제3보험 경영 가능
- 보험사고 : 신체의 상해, 질병, 간병
- 피보험성이익 : 원칙적으로 없음(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가치)

- 제3보험의 구분

- 상해보험 : 우연하고도 급격한 외래 사고로 인한 상해치료 비용 및 사망보장
- 질병보험 : 질병발생 및 그로 인한 입원, 수술, 통원 등 보장
- 간병보험 : 치매 또는 일상생활장애 등 간병을 필요로 하는 상태를 보장

- 생명보험계약 vs 손해보험계약

- 생명보험 : 사람의 생존, 사망 / 정액보상 / 장기
- 손해보험 : 재산상의 손해 / 실손보상 / 단기

제3보험 관련 법규

(8)

- 상법상의 지위

- 상법에서는 제3보험이라는 용어 없음
- 상해, 질병보험은 상법상 인보험 / 간병보험은 상법에 미반영
- 생명보험의 15세미만자, 심신상실자, 심신박약자 사망은 무효이나
상해보험은 적용 받지 않음
- 질병보험은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 규정을 준용

- 보험업법상 근거

- 3보험업은 독립된 하나의 보험업 (생보나 손보의 일부 X)
- 3보험 가능 보험사 : 독립 제3보험사,
모든 종목에 대해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및 생명보험회사

- 제3보험 모집자격

- 금융위원회의 등록업무를 위탁 받은 보험협회에 등록
- 시험합격 + 교육이수 / 3년 이내 3보험 업무에 1년 이상 종사 + 교육이수
- 제3보험만 모집하려면 생명보험 혹은 손해보험협회 한 곳에 등록 (양협회X)

제3보험의 특징

(8)

- 제3보험의 특징

- 경영 : 생보, 손보는 경영금지이나 제3보험은 경영허용
- 질병사망특약 요건
 - *생명보험 : 보험기간 제한 없음 / 보험금액 제한 없음
 - *손해보험 : 보험기간 80세까지 / 보험금액 2억원
- 보험금의 지급방법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

- 피보험성이익 : 손해보험에서 필수 개념(실손보상이 가능한 제3보험 존재)
 - *금전으로 산정 가능
 - *보험사고 전에 확정
 - *피보험성이익을 최고한도로 계약
(생명보험, 제3보험은 피보험성이익 해당사항 없음)

- 제3보험 설계기준

- 제3보험은 보장성보험
- 약관상 보장하지 아니하는 원인으로 사망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소멸
- 정액보상, 실손보상 모두 가능하며 실손보상은 비례보상

상해보험

(8)

- 상해보험 의의
 - 우연하고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치료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상해의 결과로 인한 사망 보장 상품
 - 상해인정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생명보험보다 많음
- 생명보험 VS 상해보험
 - 상해보험 : 사고 발생 여부 및 발생시기, 발생원인, 피해정도 등이 불확정적
 - 생명보험은 발생시기만 불확정적
- 상해사고의 요건 (3가지 동시 충족)
 - 1) 우연성 : 원인 또는 결과의 발생이 예견되지 않는 상태
 - 2) 외래성 : 신체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기인 (내재성X)
 - 3) 급격성 : 결과의 발생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상태 (계속성X 지속성X)
- *상해와 질병 관계
 - 상해사고의 결과로 발생된 질병은 보상
 - 질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해는 보상제외

상해보험의 종류

(8)

- 상해의 개념
 - 반드시 외관상 상처자국을 남기는 것에 한정하지는 않음 (부상보다 넓은 개념)
(예 : 1급 감염병)
- 상해보험의 주요 보장내용
 - 재해사망보험금 :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
 - 재해장해급여금 : 장해분류표상
 - 재해수출급여금 : 재해분류표상
 - 재해입원급여금 : 재해로 인한 직접치료를 목적
 - 만기환급금 : 만기환급형인 경우로 만기애에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경우
- 상해보험의 일반적 가입조건
 - 보험기간 : 1년 이상
 - 가입대상 및 연령 : 고연령자도 가능 (일부 위험직 제외) (연령에 관계없는 단일률)
 - 직업별위험률을 적용 : 직종별 위험등급체계
 - 보장하지 않는 사망 : 예로 암사망은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계약소멸
(질병사망은 특약으로 보장 가능)

상해보험

(8)

- 직업, 직무 변경시 알릴의무
 - 직업별 위험등급은 총 5등급으로 구분 : 등급에 따라 3단계로 위험률 적용
 - 위험한 직업, 직무 변경시 :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통지할 의무
(보험수익자X)
(직업변경을 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음)
 - 통지의무 불이행시 : 보험금 삭감 가능
 - 보험회사는 직업(직무) 변경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
(해지시 해약환급금 지급)
 - 변경된 직업과 관계없이 발생한 사고는 보상 받을 수 있음
- *예) 사무직에서 귀농 : 통지의무

질병보험

(8)

- 질병보험
 - 질병 : 신신의 전체 또는 일부가 일차적 또는 계속적으로 장애를 일으켜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
 - 질병 : 원인이 신체에 내재 / 외래성 X / 노화로 인한 요통
 - 상해 : 원인이 외부에 존재 / 외래성 O /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침
- 질병보험의 가입조건
 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
 - 가입가능 연령 : 대부분 만15세 이상
 -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 높아짐 (고연령 및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제한)
(상해보험 : 직종별 위험등급 체계)
 -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전 사망 : 계약자적립액 지급 후 보험계약 소멸
 - 종신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3보험 시장은 다양한 질병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

질병보험의 종류

(8)

- 암보험
 - 대표적인 질병보험
 - 보험기간 : 대부분 10년 이상(만15세 이상)
 - 보장개시 : 일반적으로 90일 이후 보장개시
 - 만기환급 유무 : 만기환급형, 순수보장형
 - 주계약, 특약 모두 가능
 - 제자리암(0기암)의 경우 암관련 보험금의 10~20% 지급
- 암보험금의 종류
 - 암진단보험금 : 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
 - 암직접치료입원보험금 : 동일한 암 치료로 2회 이상 입원시 1회 입원으로 간주 합산 치료 중 보험기간 만료시 회당 최고한도일 기준 보장
(암치료 후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경우는 지급예외)
 - 암직접치료통원보험금
 - 암수술보험금 : 암수술로 지출된 금액
 - 암사망보험금 : 특약

실손의료보험

(8)

- 실손의료보험 개요
 - 질병, 상해로 치료시 실제 부담한 의료비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보상
 - 국민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액 + 비급여 항목의 합계액
(2018년 4월부터 단독형 상품으로 판매)
 - 다수 계약시 비례보상 :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초과이득 금지
- 실손의료보험 현황
 - 4세대 실손의료보험(2021) : 주계약(급여) + 특약(비급여)
 - 연간 보장한도 : 급여 5천만원, 비급여 5천만원
(통원 회당 20만원 이내, 30만원X)
 - 자기부담률 : 급여 20%, 비급여 30%
 - 공제금액(통원) : 급여 의원급 최소 1만원, 종합병원 최소 2만원
비급여 최소 3만원
 -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
비급여만 적용(할인, 할증방식 / 의료취약계층 예외)

간병보험

(8)

- 간병보험
 -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상태가 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간병자금 및 생활비 등을 지급하는 보험
 - 일상생활장해상태 :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없으면서 식사하기, 화장실 사용하기, 목욕하기, 옷입기 중 어느 하나라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 (말하기 X)
- 간병보험의 종류
 - 공적 장기간병보험 :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; 사회보험 방식
 - *만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만65세 미만의 자 장기요양 인정점수에 따른 1,2등급 판정 필요 (경액보험금 X)
 - 민영 장기간병보험 : 공적보험보다 먼저 시작
 - *보험금 지급방식 : 정액보상, 실손보상 ; 우리나라 정액보상형태 일상생활장해상태, 중증치매상태 진단

간병보험

(8)

- 간병보험 면책
 - 일상생활장해보장 : 90일
 - 중증치매보장 : 2년
 - 면책사항 : 알콜중독, 정신질환 등
- 간병보험의 가입조건
 - 보험기간 : 대부분 종신(일부 80세 만기형)
 - 가입가능 : 일반적으로 30세 이후
 - 위험률변동제도 : 금융위원회 인가를 얻어 위험률(보험료) 조정

합격과 성공을 기원합니다
baehom@naver.com